
수 신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권태선)

참 조 : 청와대

발 신 :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

내 용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바라는
위원장의 상에 대한 설문 결과 포함

문 의 : 명숙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 010-3168-1864, nhrck.rcommittee@gmail.com)

날 짜: 2021. 6. 29. (총 29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

-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바라는 위원장의 상에 대한 설문 결과 포함

1. 2021년 4월 말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입니다.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62개 단체가 참여하여 4월 27일과 5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지명기관인 청와대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 구성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도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2.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었고, 6월 14일 구성 후 첫 회의를 하였습니다. 6월 15일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인권위원장 후보를 공개모집하였습니다.
3.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6월30일 첫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심의에 앞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자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짧은 기간이지만 인권활동가 대상의 설문작업을 하였고, 6월 30일 각 분야의 인권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과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차기 인권위원장의 선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의견서 외에도 ‘차기 위원장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인권활동가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도 첨부합니다. 설문결과에는 인권위원장의 선정기준만이 아니라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와 차기 인권위원장의 해야 할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인권위의 역할과 한국 인권상황에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특히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시민사회와의 소통’, ‘소수자인권 옹호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5. 그 외에도 2009년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과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이 작성한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도 첨부합니다.
6. 올해는 인권위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만큼이나 인권상황이 많이 변화된 현실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위가 되도록 적절한 인권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의견서와 설문결과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자료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인권 위원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기관인 청와대(대통령)가 임명합니다. 2018년 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이러한 인선절차는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구성된 것으로 투명성과 참여성, 독립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인선절차가 적절한 인권위원장의 임명을 바로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속에서만 적절한 인권위원장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인권위의 현재의 상태가 필요로 하는 인권위원장이어야 합니다. 올해로 인권위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지금, 인권위 설립 초기 필요했던 위원장의 상과는 다른 자질 과 포부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국가인권기구의 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감수성과 인권경 험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 수호의지, 도덕적 청렴성 등은 여전히 중 요한 자격기준입니다.

1.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사항

1.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 는 현장성이 높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라는 불평등과 혐오, 감시와 정보인 권 침해 등 전반적으로 인권이 후퇴되는 상황에서 인권현장과 소통하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할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인권의 의제와 방향도 변화한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재난시기 필요한 인권의 원칙이 정리되어 야 하며, 인권의 목소리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사회적 소통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둘이 전제 되지 못함으로써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권위의 존재는 미비했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은 끝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인권침해 등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 비정규직노동자 인권이나 검찰개혁, 수사권조정, 사법부개혁과 같은 인권과 관련이 깊은 제도 변화에 있어 인권위는 의미 있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인권현안과 관련한 입장과 정책 마련에 있어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인권의지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 기후위거나 돌봄과 인권, 디지털접근권과 정보인권 등 새로운 인권의제가 분명해지는 만큼 이

에 따른 인권담론과 인권기준을 제시하려면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어야 한다.

- 인권활동가들의 72.6%가 인권위원장 후보 선정과정에서 가장 우선시할 것으로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제도적 개선 의지가 뚜렷한 사람을 꼽았다.

2. 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인권위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 어떤 사안에서도 혐오와 차별에 맞서 인권의 가치화 소수자 운동에 힘을 쓰는 사람이 필요하다. 권력이나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인권의 원칙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겪는 인권침해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인권에 있어 원칙적인 입장보다 대중적인 여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만큼 차기 인권위원장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권의 가치 아래 장애인도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잘 이해하고 가슴과 발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권위원장은 사회의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인권의 그늘아래 놓여있는 모두를 위해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이주민인권문제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종차별·혐오 문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만큼 이주민 커뮤니티와의 직접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주민인권활동을 하는 인권위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기관 등에 대한 권고를 넘어 실제로 권고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끈질기게 모색하는 위원장이어야 한다.
- 과거에 비해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하여 의미 있는 표명을 한 것은 긍정적이다. 국가기관으로서 입장(2018년 무지개 깃발 게시, 2019년 진정서 양식에서 성별란이 자유기술식으로 개정,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트랜스젠더가시화의날 등에 인권위원장 성명) 표명이 끼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정사건의 처리, 협력사업이나 소통과 관련해서는 적극성과 전문성이 여전히 부족하다. 차별금지법이 없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차기 위원장은 성소수자인권에 관심과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 인권활동가의 69.9%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인권취약계층 및 시민사회와 소통 역량이 뛰어난 사람’ 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3.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가인권기본법의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교육기본법, 군인권옹호관제도 개선 등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 국제인권기준의 제도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현재 가장 시급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추진할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시민권을 얻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집단을 위한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불시부대방문조사권, 수사 중 사건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모두 삭제하는 등 군인권 옹호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해야 하는 기구가 국가인권기구다. 위원장은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그 어떤 권력 집단이나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인권위의 현실은 참담하다. 진정을 해도 행정부처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거나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분명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직권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때로는 여론을 핑계로 인권침해는 의제에 대해 입장표명도 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위원장의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경찰, 검찰, 군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드배치 등 국책사업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표명과 인권침해사안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고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인권위는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감시하는 국가기관일 뿐 아니라 차별시정기구입니다. 또한 성희롱/성차별시정기구이자, 장애인차별시정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군, 경찰, 검찰, 교도소 등 정부기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해결도 인권의 증진도 불가능합니다. 인권의 문제를 법의 관점이나 국가권력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인권현장 경험과 감수성이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인권정책 증진은 진정사건만 다루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인권위원장은 이러한 인권위의 역할과 성격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 조사나 장애인차별진정사건에서 의미 있는 진정 결과가 있었던 면은 있다. 그러나 구치소 코로나집단감염이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이나 경찰권력 남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연일 군인권 문제가 발생하지만 인권위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 인권위는 제2의 사법기관이 아니다. 실정법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아니라 국제인권기준과 인권현장과 인권감수성에 기반에 해결하려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범조인이든 비범조인이든 인권현장에 연대하고 협력한 다양한 경험으로 법의 관점을 넘어서는 경험과 감수성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위언장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9.7%로 인권활동가들이 세 번째로 인권위원장의 주요한 자격기준으로 뽑았다.

6.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 파리원칙에서도 강조하듯이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인권위가 인권현안을 발굴하고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를 통해 인권증진하는 것을 인권위의 역할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 시민사회 출신인 현 위원장조차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이나 소통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이었다는 점은 쓰라린 교훈을 준다.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한 인권위의 역할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7. 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권위 20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뛰어넘고 현재를 변화시키려는 혁신 의지가 강한 새로운 인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를 위해 혁신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 인권위에 진정을 하거나 협력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인권위 관료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 인권위원 및 인권위 조사관의 관료화에 인권위원장의 자질과 지향은 큰 영향을 미친다. 현 인권위가 관료화 극복을 위한 인권위 혁신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조직을 비민주적 운영했다는 비판이 인권위 내외부에서 터져 나오는 현실은 씁쓸하다.
- 인권위 설립 초기의 조직의 안정화가 우선시 되었다면, 현재는 인권위 내외 구성원과의 소통 능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민주적 조직 운영능력과 함께 자(自)기관이기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안목이 있어야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새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최근의 정치권의 세대교체에서도 보이듯, 달라진 인권상황에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권증진보다 자신의 경력이나 명예,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할 때 새로운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을 뿐 아니라 인권위 혁신위 권고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II. 9대 인권위원장의 과제

1. 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인권기본법 제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분야에서의 직권조사를 활성화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위 인력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3.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의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인권의 문제의식이 정부와 사회적
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후퇴된 인권을 어떻게 회복할지 구체
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인권위 인권증진행동전략에서도 제시된 ‘재난과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선제적 인권보호 노력
강화’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사회에서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기후위기,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롭게 제기되
는 의제에 대한 인권담론의 확대가 필요하다.

4.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 홈리스 및 청년주거문제 등 주거권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5인 미
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문제 등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권고나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5.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과 지역인권의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

- 지역사회에 인권이 뿌리내리고 수도권 중심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권위도 지방정부 등에 대한
감시자 역할, 지자체 인권부서의 역량강화 등 지역인권 증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 지역인권사무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요구에
조응하며 지역사회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허브기관으로 위상과 권한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
다.

6. 인권위 진정 및 정책기능,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국가인권위 혁신위의 과제를 지
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인권위의 3대 기능 중 진정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위 진정과정에서 법률상 조
사요건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거나 진정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연되어도 진정인에게 사건의 처리도 공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조사담당관
의 소극적 태도는 여전하다. 이와 관련한 인권위 혁신위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만큼 혁신위
과제 이행은 중요한 과제다.
- 인권위가 정책과 교육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혁신위 과제 이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권위원 및 조사관들의 전문성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위 관료화를 극복
하는 혁신위 권고도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2>

인권시민사회가 바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설문 결과

○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의 목적

2021년 9월, 현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가 2021년 6월 14일 구성되었다. 이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인권·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의 구성이다. 이 후보추천위는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 및 인권 향상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군을 추려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에 후보추천위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 후보군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회원)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의 자격 및 차기 위원장의 역할과 과제를 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될 필요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는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회원)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의 자격, 선정기준, 차기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 설문조사의 진행과 분석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회원)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의 자격 및 차기 위원장의 역할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연석회의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회원)를 위한 온라인 설문지를 함께 작성하였다. 이를 2021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배포하였고 총 73명의 활동가들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회신된 온라인 설문지는 모두 SPSS 통계패키지를 통해 자료 수합 후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1. 설문에 참여해주신 응답자들이 주요하게 활동하는 인권운동의 영역 및 의제

<표 2> 설문응답자의 주요활동 영역 및 의제

주요 활동 영역 및 의제	빈도	비율	
일반인권	42	57.5	총응답자 73명 (100.0%)
반차별	40	54.8	
성소수자 인권	39	53.4	
노동인권	23	31.5	
인권교육	22	30.1	
이주민 인권	22	30.1	
여성 인권	22	30.1	
HIV감염인 인권	22	30.1	
아동청소년 인권	20	27.4	
난민 인권	19	26.0	
국가폭력대응	19	26.0	
장애인 인권	18	24.7	
학생인권	18	24.7	
미디어	12	16.4	
군 인권	12	16.4	
국제인권	12	16.4	
인권연구/구술	11	15.1	
공익법 일반	11	15.1	
병역거부자 인권	11	15.1	
홈리스 인권	11	15.1	
인권 거버넌스	10	13.7	
문화예술	10	13.7	
평화일반	10	13.7	
반빈곤/재개발	8	11.0	
정보/통신	8	11.0	
사법정의	8	11.0	
정보인권	8	11.0	
열사추모	3	4.1	
기타	9	12.3	

본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에게 현재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의 영역과 의제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물어보았다. 이 문항은 설문응답자들이 여러 이슈와 영역을 포괄하여 활동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총응답자 73명이 가장 많이 응답한 인권영역 및 의제로는 ‘일반인권’ 이 가장 많았다. 총응답자의 57.5%인 42명이 답했고, 다음으로 응답이 많았던 인권영역 및 의제로는 ‘반차별’ 이었다. 총응답자의 54.8%인 40명이 답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인권영역 및 의제로 ‘성소수자 인권’ 분야였다. 다른 영역 및 의제에서 활동한다는 응답보다 단연코 많았다. 총응답자의 53.4%인 39명이 ‘성소수자 인권’ 에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노동인권’, ‘인권교육’, ‘이주민 인권’, ‘여

성인권’, ‘HIV감염인 인권’ 영역에서 주요하게 활동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타영역에서 활동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9명으로 ‘감옥인권’, ‘건강권’, ‘기후위기’, ‘재난과 인권’, ‘주거권’, ‘노인인권’, ‘집회의 자유’ 등이 있었다.

<표 3> 설문응답자의 주요활동 영역 및 의제(기타의견)

기타의견	빈도
감옥인권	1
건강권	1
기후위기	1
노인 인권	1
재난과 인권	2
주거권	1
중간지원조직	1
집회의 자유	1
전체	9

2.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1)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표 4>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항목	빈도	비율
매우 잘하고 있다	2	2.7
잘하는 편이다	20	27.4
그저 그렇다	36	49.3
잘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12	16.4
매우 못하고 있다	3	4.1
전체	73	100.0

설문응답자들에게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저 그렇다’ 고 답한 응답자가 49.3%로 가장 많았다. ‘그저 그렇다’ 고 답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매우 잘하고 있다’ 와 ‘잘하는 편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들이 30.1%로, ‘매우 못하고 있다’ 와 ‘잘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라고 답한 응답자 20.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

2) 국가인권위원회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 (오픈항목)

<표 5> 국가인권위원회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 (오픈항목)

국가인권위원회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		빈도
친인권적 권고 및 소수자의 목소리 대변	친인권적 권고를 내는 것들, 적절한 권고를 내고 있다.	6
	긴급한 권고가 필요한 성소수자 사안에 대해서 진일보한 입장을 내줘왔던 거 같다	2
	평등법 제정 권고나 코로나19 대응에서의 인권 존중 필요성 대변 등 필요한 곳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면에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느린 편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유일한 국가기관	1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의미가 크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같이 주요 이슈를 직면한 점도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2
인권감수성 확대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시화됐다는 건, 나름 활동을 지속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인권감수성을 심어줬다고 생각한다. 실례로 성소수자 존재와 현실에서 겪는 불평등과 아픔을 많이 다루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1
	소수자 인권교육	1
반차별 대응	자유권, 반차별,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고 있다	1
독립성 견지	종교 및 정치 등 다양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보편적 인권 가치 추구	1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에 한해,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다¹⁾. 가장 많은 응답은 ‘친인권적 권고를 내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²⁾. 그 중에서 특히 ‘성소수자 사안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을 내주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2명도 있었다. 그리고 평등법 제정 권고 등 필요한 곳에서 목소리를 내었다는 의견,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의견이 있었다. 대체로 설문응답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한 곳에 걸맞게 필요한 ‘친인권적 목소리’를 내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잘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에서 ‘잘하고 있다고’고 답한 이유에 대해서 응답한 응답자의 수는 18명이었다.

2) 이 문항은 열린 응답 방식으로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열린 응답 방식으로 모은 응답은 각 응답에서 추려낼 수 있는 항목(키워드)을 뽑아 재분류하였고, 재분류한 항목별 응답 수를 재추정하여 빈도수로 기재하였다. 한 명의 응답자가 여러 항목(키워드)의 응답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하여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한 명의 응답자가 복수응답을 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각각의 항목별 빈도수로 따로 카운팅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 (오픈항목)

<표 6> 국가인권위원회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 (오픈항목)

국가인권위원회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		빈도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응 부재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예: 코로나 대응, 경찰인권침해, 노동인권침해	7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 부재	단순히 권고를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정책 기능을 다하지 않고 있다 예: 차별금지법 초안 논의 이후의 설득과정이 없음.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산업재해 사망 등 관련 권고만 내리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7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소수자 등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예: 군인권보호관 등 주요 입법과제에서 매우 후퇴한 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실효적인 장병 인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제도가 되어가는데 정작 설치 주체인 인권위는 이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	3
	사회권 분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예: 주거권 인정에 대한 부분	2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족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협업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예: 시민사회의 협력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6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해서 지역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지역 인권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는데, 내실없이 유지되고 있다	1
사법기관화/관료화의 문제	사법기관화/관료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며, 그에 따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못하고 있다	5
	진정사건이나 여타 사안에 대해, 법의 틀을 뛰어넘어 국제인권법규나 확장되어 논의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권리보장의 새로운 시각, 지평, 논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미흡 예: 재난지원금 차별 지급에 대해, 지방자치법에는 이주민을 주민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서 지자체에는 권고할 수 있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권고를 못한 부분.	1
현장성 부족	긴급한 인권 현장을 직접 찾는 모습이 부족했다 (현장성 부족)	3
시의성 부족	시의성 있는 의제에 대한 인권위 자체의 의견 개진의 부재, 진정 등에만 의지한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 예: 코로나 대응	4
인권교육에서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사업도 보수적이거나 협소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내용도 형식적이다.	1
	반인권적 인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이나 인권교육 강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1
인권진정 과정의 문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판단을 하면서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1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에 한해,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다³⁾.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7명), 단순히 권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대한 적극적 설득을 하는 등의 인권정책을 실질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7명) 때문에 현 국가인권위원회가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답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협업의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6명)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점점 사법기관처럼 변화하고 있고, 관료화되고 있어 실제 인권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5명)들이 현 국가인권위원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응답들을 주요 항목(키워드)별로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법기관화/관료화의 문제에 대해 지적과 시의성 있는 인권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이처럼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방향에 대한 설문응답자들의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소 모순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의 수가 더 많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점보다 ‘잘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의 가설은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의 가설은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전 현병철, 이성호 위원장이 이끌었던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세 번째의 가설은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권위원회를 보면서 문제가 되는 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세 번째의 가설은 실제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 제시한 응답자들의 응답들을 살펴볼 때, 전면적으로 배치된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기술된 응답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기술된 응답에 비해 훨씬 더 추상적으로 기술된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기술된 응답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상세히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추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3)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 응답자는 26명이었다. 26명의 응답자들은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15명 뿐 아니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 11명을 포함한 수치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들도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의견을 밝힌 내용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정에 대한 평가

1)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

<표 7>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본 적이 있는가?

항목	빈도	비율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본 적이 있다	30	41.1
없다	43	58.9
전체	73	100.0

설문응답자들에게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총응답자의 41.1%인 30명이 진정을 넣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점

<표 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정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점이 있는가?

항목	빈도	비율
진정과정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	21	72.4
없다	8	27.6
전체	29	100.0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 한해 진정과정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총응답자의 72.4%인 21명이 ‘바뀌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진정과정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 한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확인해보았다⁴⁾. 이 문항은 열린 응답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정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22명의 응답자가 답을 하였다. 그러나 이 응답들은 여러 층위의 의견들이 종합되어 기술되어 있어서 각각의 항목(키워드)를 뽑아 재분류하여 빈도수를 수치화하여 표에 기재하였다.

<표 9>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정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정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점		빈도
피해자 특정의 문제	진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각하되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예: 개인 진정으로만 접수받는 것은 집단적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3
진정과정에 대한 문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림 (2년 넘게 판단을 유보한 경우도 있었음)	9
	절차가 복잡하고 과정이 길다	1
	전 과정의 신속하고 투명한 진행 & 진정과정 진행상황을 당사자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 (진정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법원 전자소송제도와 유사하게 그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진정인들이 이를 투명하게 알 수 있어 신뢰도와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3
	진정과정에서 법률상 조사요건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	2
권고 이후 후속조치 부재	권고 이후 모니터링 필요	1
조사 및 진정과정에서의 담당자의 태도 문제	진정하게 되면 진정인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한다/ 조사담당관의 소극적 태도	6
	어렵다.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는 말 대신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부터 우선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의 장애인 비하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진정을 했을 때 신청 서류를 받는 분의 매우 고압적이고 추궁하는 태도 때문에 매우 놀랐다. 근본적으로 진정을 받을 때의 자세가 바뀌었으면 한다	1
보다 쉬운 접근성 확보 필요	이주민, 아동, 발달장애인 등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고용허가제 16개국 언어로 진정절차 안내,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Easy-to-Read 버전의 진정서 예시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1
	인권위 혁신위가 조사구체 과정에서 진정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했던 것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정 중 바뀌었으면 하는 점으로 설문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답변한 내용은 ‘진정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9명)이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진정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6명)도 다수 있었다. 또한 ‘진정과정이 진정인 당사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3명), ‘진정과정에서 피해자 특정의 문제’ (3명), ‘법률상의 조사요건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2명)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설문응답을 별도의 항목으로 재분류하였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은 진정과정의 절

차 및 진정내용의 해석 문제,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의 문제 등 진정을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한 경우였고 다음으로 진정과정에서의 담당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거나, 피해자 특성의 문제, 보다 향상된 접근성에 대한 필요를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4. 이런 인권위원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1) 이런 인권위원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표 10> 이런 인권위원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권위원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빈도
현장에 민첩한 위원장	인권침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성이 높은 위원장 정치, 여론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학자보다는 활동가나 실무가로서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 한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인권 의제를 다뤄왔던 사람.	22
독립성의 견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하는 사람	16
소수자 인권 보호 및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위원장	어떤 사안에서도 인권이라는 가치를,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을 존중할 수 있는 인권위원장, 권력, 혐오세력 눈치 보지 않으면서 인권의 원칙을 지켜갈 수 있는 위원장	11
	혐오와 차별에 맞서 소수자 운동에 힘을 쓰는 위원장	11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시의적절한 인권 원칙을 표명할 수 있는 위원장 예: 코로나19 이후의 인권의제 등	3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위원장	8
인권시민사회와 협력	시민사회와 잘 소통하는 위원장,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고 그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집행하지 않는 인권위원장	7
실질적인 인권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원장	진정에 대한 조사와 권고는 인권위의 중요하지만 일부의 역할이고, 그 외에도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고, 이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은, 조사와 홍보, 대외협력 등의 실무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실무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권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할을 기꺼이 맡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가 인권위원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인권위원회의 혁신	인권위 혁신과제를 잘 이행하는 사람; 인권침해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애쓰는 위원장	6
진정인의 입장에 선 위원장	권력이 아닌 인권침해 당사자(진정인)과 눈 맞추는 위원장	4
지역 인권의제에 대한 관심	지역 인권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1
법이 아닌 인권의 원칙으로	지금은 마치 제2의 사법기관과 다름없어 보인다. 사법적 해석과 배치되더라도, 인권침해를 인권침해라고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1

비주류의 조건	비주류적 조건을 가진 사람 : 여성, 장애인, 미/비혼, 성소수자, 병역거부자 등	1
성과중심주의 탈피	재임기간 동안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권위원장	1

설문응답자들에게 ‘이런 인권위원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물어 보았다⁵⁾.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인권침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첩한 위원장이 필요하다’ (22명)고 답했다. 다음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16명)는 응답이 있었고, ‘어떤 사안에서도 인권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위원장’ (11명), ‘혐오와 차별에 맞서 소수자 운동에 힘을 쓰는 위원장’ (11명), ‘차별 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위원장’ (8명), ‘인권·시민사회와 잘 소통하고 협력하는 위원장’ (7명), ‘조사와 권고 외에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위원장’ (7명), ‘인권위원회 혁신과제를 잘 이행하는 위원장’ (6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2) 이런 인권위원장이었으면 좋겠다고 답하신 이유는?

<표 11> 이런 인권위원장이었으면 좋겠다고 답한 이유

이런 인권위원장이었으면 좋겠다고 답한 이유		빈도
인권위 독립성 견지의 부재	진정 결과가 행정부처, 정부의 눈치 보기가 많았기 때문,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당히 관료화되었고 사법기관화 되어 있는 듯하다,	11
소통과 협력의 부재	그간 시민사회 출신으로 들어간 위원장도 시민사회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현 위원장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 독단적이지 않고 민주적인 소통이 가능한 위원장이면 좋겠다.	10
변화하는 인권현안, 정채된 인권위	한국사회 시급한 과제, 인권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인권위원회, 시대와 상황은 빠르게 변하는데 인권위가 따라오지도 못하고 과거의 관성에 젖어 있는 답답함이 있었다, 인권위원회 전반적으로 십수 년 전에 일했으나 그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현 위원장 취임과 함께 복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권위원회가 십수 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	10
인권원칙의 단호한 표명	소위 부담되는 의제나 이슈에 대해 대중, 여론의 이름을 빌어 권리 억압이나 인권적 후퇴를 정당화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9
변화를 이끌어내는 국가기구로서의 역할 부족	존재하기만 하는, 상징적 존재가 아닌 실제로 변화를 직접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기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9
현장성 부재	위원장의 입장문 등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활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 현장의 목소리에 다가가는	8

5) ‘이런 인권위원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묻는 문항 역시 열린 응답방식으로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의 응답은 각각의 항목(키워드)들을 뽑아내어 재분류하였다. 실제 이 문항에 대해 응답한 응답자의 수는 66명이었는데, 실제 표에서 나타나는 빈도수는 항목별로 재분류하여 측정된 수치이다.

	사람이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하고 독립적인 입장도 잘 낼 수 있다	
소수자 문제와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요성	현재 가장 시급한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시민권을 얻지 못한 집단을 위한 대변인이자 그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하여 대응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소수자 문제에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편적 인권가치 추구 가능하다고 봄	7
앞으로의 인권과제의 방향성 설정의 문제	현안에 잘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심 가져야 할 인권의제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과연 국가인권위원회가 잘했는가 평가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2
인권위 혁신과제의 이행 필요	인권위원회 혁신과제가 인권위의 향후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혁신과제의 제대로 된 이행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1

설문응답자들에게 ‘이런 인권위원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를 물어보았다⁶⁾. 가장 많은 응답은 ‘현재의 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 (11명)이라는 응답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시민사회 출신의 인권위원장도 인권·시민사회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고, 그만큼 현 인권위원장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 (10명)는 응답이 많았고, ‘시대와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과거의 관습과 습성에 젖어 퇴행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10명)라는 응답 역시 많았다. 그리고 ‘대중과 여론의 흐름에 따라 인권 억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9명),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기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9명), ‘인권침해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 (8명)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6) 이 문항 역시 열린 응답 형식으로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실제 이 문항에 응답을 한 응답자들의 수는 58명이었다. 응답자들이 답한 응답은 각각의 항목들(키워드)를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빈도수로 재수치화하였다.

5. 인권위원장 후보 선정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 (복수응답)

<표 12> 인권위원장 후보선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었으면 하는 것 (복수응답)

항목	빈도	비율	총응답자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20	27.4	73명 (100.0)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제도적 개선 의지가 뚜렷한 사람	53	72.6	73명 (100.0)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	1	1.4	73명 (100.0)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인권취약계층 및 시민사회와 소통 역량이 뛰어난 사람	51	69.9	73명 (100.0)
공직자에게 필요한 청렴성을 갖춘 사람	1	1.4	73명 (100.0)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	29	39.7	73명 (100.0)
기타	1	1.4	73명 (100.0)

2018년 당시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인권위원장 자격기준과 당시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추가한 (독립성 수호) 자격기준을 바탕으로 설문응답자들에게 인권위원장 후보 선정과정에서 어떤 자격기준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⁷⁾. 가장 많은 응답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제도적 개선 의지가 뚜렷한 사람’ 이어야 한다는 응답이었다. 총응답자의 72.6%인 53명이 이같이 답했고, 총응답자의 69.9%인 51명의 응답자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인권취약계층 및 시민사회와 소통 역량이 뛰어난 사람’ 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응답자들은 이 두 가지의 자격기준에 대해 비교적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셈이다. 그리고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는 응답을 총응답자의 39.7%인 29명이 답했고,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는 응답을 총응답자의 27.4%인 20명이 답했다. 기타의견으로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역량은 인권위원장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통역량은 사무처가 가져가도 된다. 위원장은 그 소통이 왜 필요한지를 철학으로서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응답이 있었다.

6. 이런 사람은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7) 2018년 당시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인권위원장 자격기준과 당시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제시했던 자격기준을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한 것은 2018년 당시의 설문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할 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표 13> 이런 사람은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빈도
독립성 지키지 못하는 위원장	국가권력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눈치 보는 위원장,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분명하게 사수할 수 없는 사람	12
소통능력 부재&독단적 운영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 소통하지 않는 사람	8
	국가인권위원회 초기 구성원들, 반독재 또는 민주화운동을 인권운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과거 인건위원회에서 직책을 가졌던 경력이 있는 인사들, 과거 인권위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시선으로 인권위를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3
관료화에 편승하는 위원장	겉으로 보이는 전시적 행정을 하는 사람	2
	인권위의 관료화에 편승하는 위원장, 관성대로 일하고, 인권개선 의지가 없는 사람	2
	이건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위원장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라고 대안을 말 할 수 있는 위원장.	1
반인권적 경력	인권증진보다 자신의 경력, 커리어, 명예, 일자리에 관심 있는 자들은 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고, 이런 자들을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7
	반인권적 발언이나 행동을 해왔던 사람(성범죄 경력 등), 반인권적 사건에 유보적인 대처를 하는 사람	4
법조인	법조인은 아니었으면 함. 지나치게 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함	4
혁신적 실천이 부재한 위원장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사고와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	2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지 못하는 위원장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생명과 인권을 위해 목소리 내본 적 없는 사람,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차별에 침묵하는 위원장	2
	인권에 있어 원칙적인 입장보다 대중적인 여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옳은 일, 바른 조사로 다수의 국민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지탄을 받게 되었을 때, 꼬리 자르기 하는 사람.	2
	‘공정성 논란’과 같은 기형적 공정담론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보이는 사람, 혐오표현을 민원으로 여기는 사람, 인권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사람	3
	현장과 멀리 떨어져 탁상공론만 하는 사람, 인권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나 학문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5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겪는 인권침해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	3
인권위 안에서의 반인권	인권위원회 내에서 감질하지 않고, 내부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내부직원을 보호할 역량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인권보장도 못 하면서 대의를 논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1

기타	50대 이상 남성, 주류적 인물로 살아온 자	2
	대통령만큼이나 중요한 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한 나라의 위상을 어필하는 중책을 뚜렷하게 인지하는 사람에 반하는 사람이면 정말 곤란하다.	1

설문응답자들에게 ‘이런 사람은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⁸⁾.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국가권력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눈치보는 위원장’ (12명)이라고 답했다. 이는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국회 및 정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사람’, 혹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 (8명)에 대한 경계 또한 높았다. ‘인권 증진보다 자신의 경력, 커리어, 명예에만 관심있는 인권위원장’ (7명), ‘현장과 멀리 떨어져 탁상공론만 하는 사람’ 혹은 ‘인권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학문으로만 인권을 아는 사람(5명)’, ‘반인권적 발언이나 행동을 해왔던 사람(4명)’ 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적어도 ‘법조인은 아니었으면 한다(4명)’ 는 의견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설문응답자들의 응답을 재분류하여 살펴보면,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위원장은 안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소통능력의 부재 및 조직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경계도 높았다. 더불어 반인권적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명예와 경력만을 따지는 사람 또한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리고 전시행정을 일삼거나 관료화에 편승하는 위원장에 대한 반대 의견과 지나치게 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법조인에 대한 반대의견 또한 눈에 띄는 응답이다.

7. 차기위원장이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

차기 위원장이 주목하고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응답 53개)

<표 14> 차기위원장이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

차기인권위원장이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		빈도
차별금지 관련 입법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인권과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과 시행: 성소수자, 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금지 포함	18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차별 철폐	14
	혐오 확산 방지/혐오차별 대응, 반차별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	6
	여성차별, 소수자차별 국내 동향보고서 발간	1

8) 이 문항 역시 열린 응답 방식으로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 답변한 응답자의 수는 55명이었다. 응답자들의 응답은 각 항목(키워드)별로 재분류하여 빈도수를 수치화하였다. 따라서 이 설문문항에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55명 이어도 재분류한 빈도수는 55를 넘을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과제	인권기본법 제정 및 인권 관련 법(예: 학생인권법) 제정	2
	인권준중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법/제도/정책 제시	1
	국가 재난상황에서의 인권보장 예: 코로나19가 인권에 미친 영향 평가 및 향후 개선책 제시,	2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사회권의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주목 예: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등	4
	노동인권증진: 기업과 인권,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 필요, 공공기관에 인권경영제도 권고 이후의 활동 필요	4
	군/학교 인권보장	1
	여성과제. 성평등 임금, 여성혐오 범죄 근절, 여성에게 실질적 대안이 되는 일을 창의적으로 고민할 것. 예: 산부인과 진료 비급여항목 줄이기, 학교 화장실에 무상생리대 비치 등	1
차별시정을 위한 인권위원회 재편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인권위 구조 마련	1
	(국제)인권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단위에 대한 강력한 권고	2
	권고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인권위 권고 이행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대책	2
새로운 인권담론의 확대	기후위기 대응, 돌봄과 인권 등 새롭게 제기되는 의제에 대한 목소리 확대 예; 기후위기, 정보인권 문제와 같은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할 사회문제 관련한 인권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	6
인권 거버넌스의 혁신	인권 거버넌스	1
	국가인권위 지역인권사무소의 혁신 등 지역인권의 문제	2
	인권시민사회와의 소통, 협력	1
인권의식의 향상	사회 전반에 걸친 평등 확산	1
	교육, 미디어를 통한 대중의 인권의식 체득	1

설문응답자들에게 차기위원장이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가 있다면 그 인권과제는 무엇이 될지를 물어보았다⁹⁾. 차기위원장이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시행’ (18명)을 꼽았다. 다음으로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철폐’ (14명)를 꼽은 응답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혐오확산 방지 및 혐오차별 대응 등 반차별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 (6명)과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롭게 제기되는 의제에 대한 인권담론의 확대’ (6명)가 필요하다는 응답,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사회권 개선을 위한 방안에 주목’ (4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 ‘노동문제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과제’ (4명)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9) 이 문항 역시 열린 응답 방식으로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답변을 기재한 응답자들은 53명이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도 각 항목(키워드)별로 재분류하여 재분류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빈도수로 수치화하였다. 다시 말해 이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수가 53명이어도 빈도수의 합계는 53명이 넘을 수 있다. 한 명의 응답자가 여러 층위의 응답을 복합적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설문응답자들의 각각의 응답을 항목(키워드)별로 재분류하여 살펴보면, 차별금지 관련 입법 및 차별 대응과 연관된 인권과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응답(38명)이 가장 많았고, 인권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과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응답(16명)이 다음으로 많았다. 그리고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담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6명), 차별시정을 확실하게 안착화하기 위한 인권위원회의 체계 재편이 필요하다는 응답(5명), 인권거버넌스의 혁신과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4명),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2명)의 순서로 설문응답자들은 차기위원장이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를 제시해주었다.

8. 앞으로 인권위원회에 기대하는 모습

<표 15> 앞으로 인권위원회에 기대하는 모습

앞으로의 인권위원회에 기대하는 모습		빈도
인권의 원칙을 세우는 신뢰받는 기관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일상 속에 인권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11
소통하는 인권위원회	인권시민사회와 같이 대안을 찾아가는 인권위원회	7
인권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인권의 문제에서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실무상의 문제 등으로 사건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 내 주는 독립적인 기관이기를 바란다	6
인권위원회의 현장성, 전문성 강화	인권 의제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계속 부서 이동으로 인권감수성이나 전문성이 낮은 실무진들이 있다. 그리고 인권침해 현장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인권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6
관료화 탈피	인권위가 국가공무원 조직 체계 내에서 예산을 배분받고 힘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여 관료적 절차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 부서 간 이첩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 사안이 몇 개의 부서에 걸쳐있다면 다 모여서 논의를 할 수가 없는가? 서로 떠넘기 듯 업무를 보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4
독립성을 견지하는 인권위원회	인권에 관한 가장 진취적인, 권력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국가기관이 되었으면 함.	4
실질적 인권과제 수행	보여주는 행정보다 꼭 개혁해야 할 인권과제들을 반드시 관철해 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3
인권교육의 확대	인권교육 전면 시행으로 모르고 피해 주는 사람 없어질 때까지 교육하기	1

설문응답자들에게 앞으로 인권위원회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물어보았다¹⁰⁾.

10) 이 문항 역시 열린 응답 방식으로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 답한 응답자의 수는 39명이었다. 설

설문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답한 내용은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인권위원회가 되면 좋겠다’는 응답(11명)이었다. 다음으로 많았던 응답이 인권·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인권위원회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응답(7명)이었고 인권의 문제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권위원회(6명), 현장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인권위원회(6명)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인권위원회가 관료화를 탈피할 수 있어야 하며(4명), 권력에 눈치 보지 않는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4명)는 의견도 있었다.

문응답자들의 응답은 각 응답에서 필수적인 항목(키워드)들을 뽑아, 재분류하여 빈도수로 수치화하였다.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적정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일이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국제문서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구성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인권관련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인권위원장의 인선절차 및 검증과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법률의 미비는 그 자체로 인권위의 독립성의 관점에서 만족스럽지 않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위원장으로서는 부적격한 인물이 위원장이 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인권사회단체 등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 없이 그리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 및 검증절차 없이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명하며, 신임 인권위원장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의 개요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장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 8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5.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6.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7. 국가인권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국가인권위원장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5조)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는 인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려고 한다. 이것은 위원장이 인권에 대한 이론적? 전문적 지식이 풍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기간에 걸쳐 인권현장에서 직접 인권의 문제를 다루어 본 사람이어야 함을 말한다. 단순히 복지시설을 몇 년 운영했다거나, 변호사 경력이 있다거나, 대학에서 인권이나 법 관련 과목을 가르쳤다고 해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동안 인권위원의 구성이 법조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는 단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확인하는 기관은 아니다. 어떠한 법적 전문지식도 인권감수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제 인권옹호를 위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인권의식이 결여된 법조인에게서 ‘활자화 된’ 법리를 넘어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헌신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들 비롯한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지향성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인권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인권침해자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언어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정치를 넘어선 것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인권은 보편적인 인간 존엄의 요청이지만, 때로는 국가권력 혹은 사회의 지배집단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기도 한다. 인권에 관한 대립적이고 상충적인 담론 속에서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자유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인권의 평등이란 차별에 대한 거부임을 항상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원장에게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공감능력은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인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다. 충분한 기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하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만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2.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인권위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UN핸드북 2장 B).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은 항상 위협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기관이나 거대 사적 기구와 맞서는 기구이다. 즉, 한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집단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기구이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정부든 인권위의 존재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인권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당한 타협이나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권력기구에 당당히 맞서 인권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려는 시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직축소 등을 강행한 바 있다. 이제 우리 인권위는 국가권력에 순치된 정부정책의 대변 기구가 되느냐 아니면 그러한 권력의 침탈에 맞서 그 독립성

과 인권의 가치를 수호해 내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차기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장은 언제나 이러한 권력기구들의 독립성 훼손 시도에 직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임 인권위원장은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그간 벌어진 인권위 관련 사태들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만 한다.

3. 국가인권위원장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집권여당과 친분 관계에 있거나 그 정파적 이해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보호이다.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권위는 당연히 국가권력 및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처럼 강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대통령의 측근인사 혹은 정치적 가신이 임명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는 명약관화하다. 마찬가지로 인권위원장직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물도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정치적 유혹에서도 벗어나 평생을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고 인권 개선을 위하여 매진하려는 인물이어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 8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신임 인권위원장이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면 인권위원장으로로서의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인권위 본연의 임무인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사회 인권 향상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인권상황에 대해 외면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확대보다는 축소하자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개선의지가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인권위 8년의 성과와 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동안 인권위는 인권옹호를 위한 많은 결정례를 남겼음은 물론이고 인권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정책 등을 권고하며, 활발한 인권교육을 벌여왔다. 인권활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내린 결정 및 권고 등이 비록 미흡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기준을 확립해 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신임 인권위원장은 인권위가 설립된 이래 내려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결정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권고 등을 수용할 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인권위원장은 작년 촛불집회 이래로 자행되어 온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경찰 폭력 내지 공권력의 오남용, 용산을 비롯한 강제철거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 일명 사이버모욕죄 등 표

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 비정규직법, 국정원법 등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 등의 인권위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만약에 신임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기존의 성과와 인권옹호의 전통들을 무시하거나 후퇴시킨다면, 그 인권위는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인권위가 아니라 인권을 방해하고 인권을 후퇴시키는 인권격하위원회가 되고 말 것이다.

5.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인권위는 준국제기구로서 국제인권법의 국내 실현을 과제로 삼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의 ‘인권’ 개념은 헌법이나 법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즉 인권위의 활동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에 근거하는 것이다. 파리원칙이나 UN핸드북(4장 E) 역시 국제인권규범의 비준·승인의 촉구와 그 이행의 보장을 국가인권기구의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도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19조)이 인권위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인권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신임 인권위원장은 세계인권선언 이래 UN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사회권규약),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자유권규약), 장애인권권리 협약, 아동권리협약, ILO, 인권이사회 등 국제법상 합의하고 발전시켜온 국제인권체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UN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한국정부에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파업권 보장 및 공무원 단체행동권 보장, 강제퇴거 금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시행 등의 요청들을 개인이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적 권고에 대한 신임 인권위원장의 입장은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가늠해 보는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다.

6.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우리의 인권위는 UN의 권고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은 물론이려니와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모임인 국제 인권기구 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의 사무국 역할을 UN 인권최고대표실에서 맡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국가기구면서 동시에 준국제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에서도 인권위의 업무를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원장은 국제적인 감각과 식견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여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우리 인권위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러한 요건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성공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례를 전파하여 국제 사회의 인권증진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안경환 위원장 시절 우리 인권위는 국제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의 부의장국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촛불집회 시 인권침해, 인권위 조직 축소 등 현 정부의 반인권정책에 의해 우리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인권위원장은 마땅히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선출되어야만 할 것이다.

7. 국가인권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협력해야 하는 기구이다. 시민사회의 협력은 인권위가 권위주의적 기관이 되거나 관료화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게 해준다. 또한 그러한 협력을 통해 인권위는 인권현장의 실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인권위의 권고에도 사회적 비중이 실리며, 그 이행의 실현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파리원칙이나 UN 핸드북(2장 E),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에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따라서 인권위원장은 열린 마음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사회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국가인권위원장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아무런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결정이 수용되고 존중되는 이유는 바로 위원회의 위원들의 인적 구성이다. 인권 현장 활동,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덕망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로 구성된 위원회 그 자체가 바로 인권위가 미치는 사회적 권위의 원천이다. 특히 위원장은 인권위의 인격적 대표자로서 그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시민사회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거나 탈세나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자가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09년 7월 15일

가칭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준비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 교수모임